

의안번호	2213447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6.1.9.
추 계 번호	25B545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의2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등록·관리, 교육·정보 제공 및 등록 정보의 분석·활용 등을 위하여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업주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의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보고하여야 함(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수립, 감독활동,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를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업주의 입력·보고 절차,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2조의2(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	• 미첨부(제1항, 제4항, 제5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미대상(제2항) -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제51조 및 제52조¹⁾에 따른 작업중지의 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대상(제3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산업재해 예방 정책수립, 감독활동, 통계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를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등록·관리, 교육·정보 제공 및 등록 정보의 분석·활용 등을 위하여 작업중지 등록·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안 제52조의2제1항),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존 사업이 부재하며,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구축될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 요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개발·서버구축·ISP 및 기타 솔루션 비용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의 규모 산출이 곤란함
 - 또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안 제52조의2제5항) 업무 위탁 대가 지급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시스템 운영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의 발생 여부 및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
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